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100026-14

2025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일러두기

본 사례집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생산된 유권해석 사례 중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평소 질의가 많았던 주요 용어의 개념,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각급 공공기관에서 질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생산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집이 각급 공공기관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목 차
CONTENTS

1. 정의(제2조) ····· 1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78
3. 부정이익등의 환수(제8조) ····· 92
4.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제9조) ····· 104
5.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제10조) ····· 108
6.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제11조) ····· 124
7. 가산금 및 체납처분(제12조) ····· 130
8. 조사의 실시 등(제13조) ····· 134
9.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17조~제24조) ····· 138
10. 부칙 ····· 146

2025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01

정 의 (제2조)

01 정의(제2조)

① 공공기관(제2조제1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Q 01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공공재정환수법에서도 공공기관으로 보나요?

A 국·공립학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지만,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같은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Q 02 A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 공공기관 기본자산 이자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공공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면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② 행정청(제2조제2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Q 0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6호에 따라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초기 현지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부정수익자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말하고, '행정청'은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도 부정이익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라 해외취업 지원을 사업 범위로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이익 등 환수, 체납처분 등의 행정권한을 별도로 부여받거나 위탁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위탁받은 바가 없어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Q 02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 및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구 등 적발 시, 감사부서와 사업부서 중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주체는 어디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행정청"입니다.

교육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이 행정청이 되며, 행정청이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취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환수 등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幼子女), 피부양가족 지원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등을 부정수익한 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부터 제9조, 제1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부터 제9조, 제1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하여야 하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만을 위탁받고, 제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4 사업 근거 법령에는 사업수행 주체를 ○○공단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직접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 행정청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아야 합니다.

사업수행 근거 법령에 수행 주체를 ○○공단으로 하거나 ○○공단에 위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자체 정관과 ○○부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환수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공단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단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Q 05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탁이 필요한가요?

A

사업수행 및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할 조직법상 권한이 있더라도,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려면 개별법에서 그에 대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거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아야 하고, 조직법상 권한만으로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직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작용법상 권한도 필요한데, 작용법상 권한은 각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작용법상 권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위임·위탁을 받아 그 권한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공단은 「○○법」에 따라 ○○사업 권한 등을 조직법상으로 위탁받았으나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환수 등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거나 위탁받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Q 06

○○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정청구가 확인되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진흥원이 직접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직접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을 위임·위탁받아야 하나, 이 사안 조례에는 ○○진흥원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을 위임·위탁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진흥원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나목의 행정청에 해당함은 별론, ○○진흥원이 직접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7

○○재단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및 같은 조 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는 “공공기관”을, 같은 조 제2호는 “행정청”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기 다른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4호의 “공공재정”의 범위를 특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 및 제6호의 “부정청구등”의 대상을 정하기 위한 용어이며,

“행정청”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주체를 정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 및 “행정청”에 모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의 경우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한편, ○○재단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A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은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정처분 또한 ○○시에서 실시하고, 그 외의 업무로서 재단에 위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단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08

○○도지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재단이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재단이 ○○도지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사무와 그에 관한 행정권한을 위탁받았다면,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0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같은 법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부정수급 제공자, 제공인력, 이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됩니다.

국비, 도비, 시·군·구비가 매칭된 본 사업에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여 국가, 지자체가 각각 부과·징수하여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은 행정청이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정이익 가액'의 기초가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이루고 있는 재원의 종류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비, 도비, 시·군·구비가 매칭된 보조사업이라도 실제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행정청이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며, 해당 사안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발급(제11조), 사용 제한(제15조의2), 부당이득의 징수(제21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10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항제19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위의 제보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에 있어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관리하고, 같은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인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기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해당 사업에 있어 행정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권자를 명시하고 별도로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의 처분권자가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3 ○○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관련하여 ○○기관은 대학의 참여 신청을 받아 대학별 선발인원 및 선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대학에서는 자체 선발기준 수립 후 심사 및 선발하여 ○○기관으로 학생을 추천하고, ○○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학생의 기본자격만을 확인한 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권을 보유한 대학이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대학이 사실상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최종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집행적 성격으로 보이고, 학자금 지원 제도의 권한은 국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Q 14 ○○공사가 자체 수익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금 관련하여 ○○공사가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A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고시)에 따라 에너지 공급자인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장려금을 집행하고,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지원금은 송전설비주변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인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및 지원금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공사는 법령에 따라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지원금에 대한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판단됩니다.

Q 15 노인요양시설이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이 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이 있거나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공공재정(제2조제4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Q 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라 공공재정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독립기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고, 「○○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례 제5조(기능),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마을축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34조(사용료 등) 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등을 검토해 볼 때 주민자치회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주민자치회에서 징수·사용하는 수강료는 공공재정에 해당하지 않음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공익사업 시행 등을 위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한 '기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4호의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4호의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④ 공공재정지급금(제2조제5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Q 01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사업'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 및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정책 목적(사립유치원의 만 5세 무상교육)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02 「○○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지급되는 수집보상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이 사업은 농촌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수집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수집보상금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마을에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마을에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0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여 받은 급여비용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여 받은 급여비용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05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나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봉급+수당)와 같은 성격의 월정수당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실현을 위하여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급된다고 할지라도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Q 06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지원사업에 따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 금품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나요?

A 이 사안 사업의 이차보전금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약 이 사안 사업을 통해 제공된 금품등이 '대출금'이라면, '이자'라는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0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이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요양급여비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에 대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6호에서 정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Q 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하는 재활보조금, 장학금 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이하 '경제적지원금')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에 따른 피해지원기금에서 제공되는 점, 국가가 자동차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적지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5호(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09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과 이장 회의참석수당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서는 7가지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일반보전금(예산비목 30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보전금(예산비목 301)으로 편성되어 「○○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임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이장 등에게 같은 조례 제10조(실비변상)를 근거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한 반대급부(대가) 여부, 제공목적” 등인데,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비록 통장·이장·반장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과 활동비이나, 주민 편익 도모와 읍·면·동의 효율적 행정 운영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 및 공익 실현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 또한, 통장·이장·반장은 읍·면·동 행정의 보조적 역할 내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노무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실비변상적 급여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일반보전금(예산비목 301)은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과 이에 포함되는 이장 회의참석수당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10 ○○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인건비(민간위탁금)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에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여부

○○교육청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운영비·인건비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하면서,

「○○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교육청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② '공공목적 수행기관 운영 목적을 위한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청이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수업결손의 보충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내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탁교육기관 운영 목적에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위탁교육기관 운영비·인건비는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합니다.

A

③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여부는 금품의 지급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고 지급 당시 예산 비목에 한정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닌 점(「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위탁교육기관이 수행한 업무는 공공 목적의 대안교육기관 운영이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은 대상은 '○○교육청'이 아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탁교육기관 운영비·인건비가 ○○교육청의 대안교육 사무를 대신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청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운영비·인건비는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즉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11

○○국립병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되는 위탁보육료가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지급근거가 있을 것,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일 것 등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여부

○○국립병원에서 근로자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법령상 지급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병원은 사업주로서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의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어린이집이 ○○국립병원을 대신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반대급부로 볼 소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위탁보육료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2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 및 시·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교육부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보통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의 경우, 1)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2) 총액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에 대한 구체적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보유하고 있는 점,

3)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취지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통교부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부정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실익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A **기금의 경우** 1)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점, 2) 조성된 기금의 설치·운용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 3) 공공재정환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부정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실익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여부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청구자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 기금 등을 재원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특정 정책 목적 등의 달성을 위해 학교, 개인 등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3

○○시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제3항 및 「○○시립예술단 단체협약」에 따라 ○○시 자체 예산으로 예술단원에게 공연보상금(301-12,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과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가 시립예술단에 지급하는 공연보상금과 대체휴무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연보상금의 경우 지급 근거가 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안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공연보상금은 휴무일 공연을 한 시립예술단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성격의 금품등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보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금전, 채권, 물품, 유가증권(상품권, 이용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4

국립외교원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및 「국외연수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외무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연수비는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5조제1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의 인센티브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훈련비(입학금·등록금·체재비·부담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 중 등록금에 속하는 것으로, '연수비' 자체와 분리하여 공공재정지급금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안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Q 15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보조하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보조하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 등 금원은 사립학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이며, 그러한 보조금 등 금원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사립학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6

「군인사법」 제46조의6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병(兵)에게 지원되는 자기개발비용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병의 학업 및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양한 자기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사법」 제46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9에 따라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민간 자격 취득 및 어학 등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등의 분야에 대해 지원 한도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병 자기개발비용은 「군인사법」 제4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9에 지급 근거가 있고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점,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지급되고 그 성격상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재정지급금 여부는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고 지급 당시의 예산비목에 한정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 병 자기개발비용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17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선정된 우수부서에 지급한 '포상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위 포상금은 ○○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진대회 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8 국고보조사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급여, 도비보조사업인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또는「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은 모두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19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등 금원은 학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이며, 그러한 보조금 등 금원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사립학교가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대금은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공사계약에 따라 지출한 공사대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오지급이 발견되었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환수 대상은 아니나, 이와는 별개로, 사립학교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계약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어 상대방이 얻게 된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20

○○부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국고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 50%)을 교부하였고, ○○군은 민간 위탁 조례를 근거로 수행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며 민간위탁금(군 예산, 50%)을 교부하였습니다.

○○부 국고보조금과 ○○군 민간위탁금을 매칭하여 수행기관에 교부한 경우 교부된 금품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군은 ○○단체와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군 예산과 ○○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수탁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금품등은 ○○사업의 위탁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므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판단되어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보통교부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고, 총액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지방교육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보통교부금과 달리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교부금이 보조금법이 정의하는 보조금의 성격에 그대로 부합'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을 참고할 때, 특별교부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기금'에서 반대급부 없이 학교 또는 개인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② 공공재정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③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인 기금에서 특정 정책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학교 또는 개인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3

○○공사에서는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공사는 검토를 거쳐 최대 75%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이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A

이 사안에서 '주민지원사업' 관련 공공재정은 총 2개로 판단됩니다.

이 중 ①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준 지원금**은 ○○법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더해 주민에게 지급한 지원금** 또한 ○○법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회서비스이용권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급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급여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는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이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간활동급여'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전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간활동급여는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이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26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 각 호의 예산 비목이 열거규정인가요, 예시규정인가요?

A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되므로, 제4조의 예산비목은 예시규정입니다.

Q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 · 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제234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 · 지원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는 '포상금'을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제118호에서 원산지표시법을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2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30 ○○공공기관이 정부교부금 없이 자체 수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기관은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마련된 예산은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부교부금이 아닌 자체 수입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31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조성·취득 또는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법 제5조에 규정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반 신고포상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의 '포상금'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33 공기업이 자체수익으로 편성된 신고포상금을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지급 근거가 있을 것, ②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일 것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사내규정에 따라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34

A공공기관이 B공공기관과 연계 실시하는 '특허비용 지원사업'에서, A공공기관이 지원대상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한 특허법인에 특허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특허법인에 지급된 특허비용이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해당 사업비는 A공공기관이 소관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A공공기관이 '특허비용 지원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기업에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며, 지급방식(직접 지원 또는 특허법인을 통한 간접 지원)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35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지원금 사업 관련 법과 예산비목(일반수용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원금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공공재정지급금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됩니다.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사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단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해외 취업자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법률과 ○○지원금 예산 비목이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36 중앙행정기관이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금리 이자차액(이차보전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Q 37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수익으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 송배전 선하지 보상금,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보상 사업비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①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3조제6호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고효율기기 설치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전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② 송배전 선하지 보상금

송배전 선하지 보상금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을 보상하는 금전으로, 각급 법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관련 판례 및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에 따라 공사가 구분지상권을 취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하지 보상금은 사실상 토지의 지상 공간 사용에 따른 임료(賃料)임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

③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보상 사업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 주택 매수비용, 주변지역지원금

재산적 보상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34만 5천 볼트 이상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을 보상하는 금전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 '선하지 보상금' 성격의 보상금임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매수비용은 송전설비주변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인 공사가 지상에 34만 5천 볼트 이상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한 주택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인 공사가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는 금전으로, 종국에 공사가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지역지원금은 송전설비주변법 제6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금품등으로, 사업자인 공사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주민 등에게 제공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Q 38

국가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전수교육지원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등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39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따라 창업기업에 지원된 사업화 자금이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에 크라우드펀딩 등록비용(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펀딩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크라우드펀딩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제공되는 사업화 자금은 사업 아이템 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 등 기업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펀딩 성공 금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한도로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되는 금품등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크라우드펀딩 등록 및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40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어린이집 보조금이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A 어린이집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41 사립학교에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거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교육청이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의 '자활급여'가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여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 및 생활 안정화를 목적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라고 할 수 있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라고 할 수 있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44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라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이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45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므로,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됩니다.

Q 4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신성장 동력 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에 공동 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 제31조 등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상금·출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재정지급금이므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47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참여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활동비란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인에게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품등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이므로(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Q 48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부가 아닌 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자체 방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공공재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아닌 '자체 방침'에 따라 출연하고 있다면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49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나 인턴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공공재정지급금인가요?

A 공공기관이 임·직원(계약직, 인턴 포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50 공공기관이 기업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 조건 융자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공공기관이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는 비용으로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5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지장물 보상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 지장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호)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A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른 물건의 보상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나 몇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지장물 보상금은 사실상 공익사업에 필요 없는 물건의 철거 또는 이전이라는 상당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금적 성격의 보상금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는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치하여 조성·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⑤ 부정청구등(제2조제6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Q 01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청구등 행위 유형(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청 내부지침인 「2023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기관 등의 기준·규정·사규'에 포함되나요?

A

○○교육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및○○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근거로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비목별 용도, 기준액 등 세부기준을 정한 기관 내부지침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다목에 따른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 법인 · 단체의 기준 · 규정 · 사규를 포함)에 해당합니다.

Q 02

○○교육청은 ○○회계연도에 B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A 사립학교에 공공재정지급금(사립학교시설지원비, 620-11)을 교부하였으나, A 사립학교가 B 사업과 무관한 C 사업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전액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 사립학교가 회계연도 종료 전에 별도의 자체 조달 재원을 활용하여 B 사업을 실시하였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다목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에서는 4가지의 부정청구등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다목에서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목적외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참고할 때 이 사안에서 사립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당초의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다목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3

○○시교육청이 체육관·운동장 조명시설 개선을 위해 교부한 시설지원비를 사립학교가 교육감의 변경 승인 없이 학교 본관입구 및 정원 바닥조명 설치공사 등에 사용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다목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나요?

A

「○○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1항에서는 "지원대상기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통지한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교육청은 시설지원비를 포괄적인 성격이 아닌 체육관·운동장 조명시설 개선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사립학교에 교부한 점, 「○○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원금의 용도변경은 교육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이 사안의 경우 교육감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않았고, 변경 승인을 얻어 시설지원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불가항력적이거나 시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가 교육감의 변경 승인 없이 체육관·운동장 조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비를 학교 본관 입구 및 원형 정원 바닥조명 설치공사 등에 사용한 행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다목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04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시 ①학부모 부담금 수준에 따라 재정지원 일부를 제외하고 있으며, ②원비 인상률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것에 대해 사전동의를 하고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이후 재정지원 조건을 위반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해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실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부정청구등 행위(허위청구)에 해당하나요?

A

사립유치원은 위 요건을 준수할 것에 대해 사전동의를 하고 재정지원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요건은 재정지원을 신청 또는 지급받는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지속하여야 할 '계속적 유지 조건'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지원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유치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여 재정지원을 받았다면 '허위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05

○○공공기관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장학사업에 따라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성적 기준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데, 장학생이 성적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허위청구'와 '과다청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A

해외장학생 장학금 계속 지원 기준은 이수학점, 성적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해외 대학 재학 기간 성적 등 미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성적 기준은 해외장학생의 계속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고, 위조한 성적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 시점에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학기의 장학금 청구 자격을 상실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6

교육청에서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을 거쳐 공립학교에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본관 교실 바닥 공사'로 집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등 유형인 '목적외사용'에 해당하나요?

A

목적사업비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인 목적사업비를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목적(용도)과 달리 사용하였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다목의 부정청구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07

국가가 ○○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을 ○○단체 사무직원이 횡령한 경우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나요?

A

○○지원금은 국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 등에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부정청구등의 주체는 지원금 수령 주체인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같이 ○○단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직원은 ○○단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무직원이 지원금을 횡령한 행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부정청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08

사립학교 행정실 소속 사무직원이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전액 지원받고 있는 교직원 급여를 횡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다목의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사안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주체는 교육청이고, 지급받는 주체는 해당 사립학교로 판단됩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는 주체인 학교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공재정지급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 담당자가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횡령한 것이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등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⑥ 부정이익(제2조제7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Q 01

○○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 징수 금지' 등 3가지 조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고 매월 유아교육비 보조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한 징수하는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2023년도 지원금 전액과 이자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2023년 지급받은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을 2024. 3.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금은 '부정이익'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유아교육비 보조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면 해당 반환분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이익'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⑦ 부정수익자(제2조제8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 · 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 · 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Q 01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공공재정지급금(사립학교시설지원비, 620-11)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행정 처분할 예정인데,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 중 누구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8호에서는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의 장"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및 현황을 참고할 때, 이 사안 공공재정지급금 교부 대상은 사립학교의 장으로 판단되므로, 제재부가금은 사립학교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02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은 시·도교육청이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는 '부정수익자'를 부정이익을 얻은 자라고 정의하면서 제1호가목의 기관·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은 부정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03 개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4. 9. 27.) 이후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부정수익자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부칙에 제2조제8항의 적용 시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령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위 당시 법령등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 9. 27. 전 국·공립학교에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2024. 9. 27. 이후에 하는 경우 국·공립학교는 '부정수익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4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상황에서, '원장'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나, 어린이집 '대표자'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환수 처분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중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에서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부정이익을 얻은 자, 즉 부정수익자에게 그 부정이익등에 대하여 환수를 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대표자'와 '원장'이 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인 점, 대표자가 보조금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15조), 운영기준(제24조) 등에 대한 준수의무를 '원장'이 아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장의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거나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 반환의 주체를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 해석함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어린이집 운영의 법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즉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Q 05

○○공사에서는 ○○법률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공사는 검토를 거쳐 최대 75%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 '부정수익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할 수 없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 · 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 · 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제1호가목의 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대상이 아닐 뿐 다른 법령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06

국가장학금은 신청 이후에 신청자의 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대학, 사회보장정보원 등 외부기관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성적, 소득 등 요건을 심사한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확정하여 지급하는데, 장학금 지급 후 학생이 아닌 가족 등 가구원의 소득요건이 변경되어 환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본인이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나요?

A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학생이므로 부정청구등으로 금품등을 얻은 자인 대학생 본인이 부정수익자에 해당합니다.

Q 07

부정이익등 환수 대상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의 대상이 다를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제2조제5호)'과 관련하여 '부정청구등(제2조제6호)'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8조에 따른 환수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의 대상은 모두 제2조제8호의 '부정수익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처분의 종류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08

교육청 소관 사립학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8-1. 사립학교가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8-2. 교육청 소관 교육지원청도 부정수익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8-1. 사립학교가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부정청구등'의 행위를 통해 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았다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8-2. 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상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어,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부정수익자에서 제외됩니다.

2025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0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0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6조의 명단 공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제28조의2의 벌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 0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환수에 대해 적용할 법령이 불분명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제3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능정보제품을 보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매칭되어 진행됨에 따라 국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 적용되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됩니다.

현행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상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0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보상금이 착오 등의 사유로 과지급되어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은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은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03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O시 협의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OO시 협의회가 해당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지방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O시협의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고 OO시협의회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04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2조, 제38조, 제45조, 제76조가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및 제2항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나요?

A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제정된 행정규칙으로서 그 성격상 단순 행정규칙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경제적 지원금의 지원중지 및 회수는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5

○○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환수) 처분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는 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환수) 근거는 있으나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는 없으므로,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시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Q 06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공공재정지급금(사립학교시설지원비, 620-11)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행정 처분할 예정인데, 「사립학교법」 제43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환수 규정은 있으나, 제재부가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6-1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과 「○○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06-2 이 사안 조례에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제재부가금 부과를 해야 하나요?

A

6-1. 「사립학교법」에는 별도의 환수 규정이 없으며, 「○○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2항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참고할 때, 「사립학교법」에서 지원금에 관한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2. 「사립학교법」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재부가금 부과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07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원되는 조기폐차지원금 및 신차구매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할 때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률에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조기폐차지원금 및 신차구매지원금은 사업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때, 전액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그 성격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 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나요?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의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Q 0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급여가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제8조의 환수, 제9조의 제재부가금,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13조의 조사의 실시, 제15조의 이의신청, 제16조의 명단공표, 제23조제1항의 포상금, 제28조의2의 벌칙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률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그 외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따라야 합니다.

Q 10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급된 무상교육비를 정책 기준에 반하여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

「유아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 ·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 외 「유아교육법」상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의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의 '다른 법률'을 「유아교육법」으로 보고, 제3항의 '다른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아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하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Q 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신고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됩니다.

Q 1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나요?

A 해당 사업의 경우 재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Q 1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환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A

보조금법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이의신청,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사업의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되나,

국고보조금은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므로(제2조제5호), 부정청구등 신고(제17조), 신고자 보호·보상(제18조~제24조), 이행실태의 점검 등(제26조)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됩니다.

Q 1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부정청구 시 보조금법, 직업능력개발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중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는지요?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A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지급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청구하였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면 되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공공재정환수법과 유사하게 제3조제1항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수, 제재부가금(추가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조사의 실시, 명단 공표 및 포상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2025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03

부정이익등의 환수(제8조)

03 부정이익등의 환수(제8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Q 0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 계산 시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의 기준을 허위내역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한 달로 봐야 하나요, 부정청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달로 봐야 하나요?

A

부정이익등에 대한 이자 계산 시,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은 허위 집행내역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고, 이자의 계산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한 행위를 한 달(허위 집행내역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Q 02

2024. 9. 27.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자 환수에 관한 적용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 시기가 아닌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부칙(2024. 9. 27. 시행) 제2조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오지급에 대한 이자 환수는 2024. 9. 27. 이후의 환수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Q 03 환수처분의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입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의 최고 한도 또는 금액 구간별로 통용되는 권장 기한 등이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하며, 납부기한의 최장 한도나 금액 구간별 권장 기한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은 해당 부정청구등의 종류, 행위 양태, 처분의 종류, 납부금액, 납부방법,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및 성격, 부정수익자의 과거 전력, 경제·사회적 상황, 동일·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Q 04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최대 분할 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시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할납부 여부 및 최대 분할 가능 기간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입법 취지, 해당 부정청구등의 종류, 행위 양태, 처분의 종류, 납부금액, 납부방법,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및 성격, 부정수익자의 과거 전력, 경제·사회적 상황, 동일·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Q 05 ○○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Q5-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자 계산 시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Q5-1 지원금이 월별 지급된 경우, 이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5-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에서는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매월 지급한바,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은 ○○교육지원청이 ○○유치원에 해당 재정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입니다.

5-2. 지원금이 월별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등에 대한 이자 부과 시 '월마다 지급된 지원금별로' ○○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를 따져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06 행정청이 기존의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 재부과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은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행정청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객관성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07 「유아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수조치 시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자까지 환수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고,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에는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자를 부과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Q 08

학생이 아닌 가족 등 가구원의 소득요건이 변경되어 국가장학금 환수 대상이 된 경우, 가구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의 귀책사유 여부만 고려하면 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며,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해야 합니다.

이때 귀책사유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09

관내 사립중학교에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하여 감사 진행 중 해당 학교에서 부정이익등을 학교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예산으로 납부하였는데, 부정이익등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교비회계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및 하위법령에는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부정수익자가 이를 어떠한 자금 출처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과 같이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제재처분을 받은 사립학교가 이를 어떤 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회계에 관하여 정하는 다른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0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가 2024. 9. 27. 시행되었는데, 벌칙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부정청구 건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4항은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 · 제2항은 허위청구 · 과다청구자 및 허위청구 · 과다청구 행위를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 9. 27. 시행)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4항의 '범죄혐의'는 제28조의2의 부정청구등의 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의 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청은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대상이 되는 부정청구등은 2024. 9. 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한정될 것입니다.

다만, 2024. 9. 27. 전 발생한 부정청구등 행위라도,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 11 부정청구 적발시점 기준(2025.10.1.)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1.1. 이후 「지방재정법」 상의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기간(2020.1.1.~9.30.)에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나요?

A 소멸시효 관련하여,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12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개별법에 따라 환수할 때 해당 법률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이자를 부과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2항은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근거 법률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Q 13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자까지 환수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은 '부정청구등'(제2조제6호 각 목)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이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자는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Q 14 행정청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 부과를 해야 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제47조에 성질상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나, 이자 부과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이자까지 환수해야 하나, 이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자는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Q 15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나요?

A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에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04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제9조)

04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제9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 납부 ·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 · 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500%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300%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200%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Q 01

공공기관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환수와 더불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A

공공기관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라는 반대급부를 받고 제공되는 금품등이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환수나 징계처분을 할 사항임은 별론,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05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제10조)

05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제10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 부과할 것
5.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의2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6.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의2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
   나.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

Q 01

○○부에서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 사실을 인정하고 환수처분 사전통지 전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A

행정청이 환수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가 환수를 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를 하기 전 기업이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02

○○시청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하던 중 의심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사업장 대표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였으며(자진신고), 이는 환수에 대한 사전통지 이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심정황 조사 중 부정수취를 인정(자진신고)한 것을 환수에 대한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로 보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전통지 이전이라도 행정청에서 조사가 들어간 이후에 자진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하나요?

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제1항은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의 제재부가금 감면 여부는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①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②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수익자가 사전통지 전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였더라도, 행정청의 조사 후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 기준」 제4호나목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줄여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3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기 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사전 통지를 하기 전”이란 행정청이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Q 04 분할납부를 통해 부정수익자가 환수금을 완납한 경우를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1항의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로 간주하여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은 법문상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 사안에 대해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제재부가금 면제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시의 고지서 발부에 따라 부정수익자가 분할납부를 통해 부정이익등을 완납한 경우,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의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05 ○○교육청의 부정수급 조사 중, 환수처분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급식비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A 행정청의 부정수급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급식비가 공공재정지급금인지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학생급식비가 공공재정지급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근거, 지급주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06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이 제재부가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나요?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제재부가금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 과료, 몰수 ·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및 시설폐쇄는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과징금 처분은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 제재부가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Q 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A

같은 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 과료, 몰수 ·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본질은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국민의 불편, 공익을 해칠 우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 과료, 몰수 ·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법 제24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08

현재 행정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시행(2024. 9. 27.) 이후 부정수익자가 행정청의 사전 통지 전 자진신고를 하고 부정이익 등을 전액 반환한 경우 기존 시행령을 적용해서 제재부가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개정(2024. 9. 27. 시행)에 따라 제10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환수를 위한 사전 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하던 것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진신고 시점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가 아닌 50%를 감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Q9-1

○○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사립학교에 '체육관 및 운동장 조명시설 개선비' 명목으로 시설사업비(620-11) ○○원을 교부하였는데, 감사 결과 해당 사립학교가 시설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립학교가 시설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시인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감사 중('24. 1월)에 관리본부에 공문으로 보고한 것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의 '자진신고'에 해당하나요?

Q9-2

사립학교가 외부재원 없이 학교운영비 내 별도의 예산을 활용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체육관 및 운동장 조명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의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

9-1.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사실을 관리본부에 공문으로 보고하였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의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2.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의 '반환'이란 해당 행정청으로 부정이익등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립학교가 외부재원 없이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체육관 및 운동장 조명시설 개선'이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것이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0 현재 진행중인 감사(조사)가 끝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1항에 의거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1] 제4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청이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사(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고, 그 외의 경우 환수를 하기 위한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및 반환완료)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50% 감경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환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는 받을 수 없고,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 11 부정수익자가 개정법률 시행일(2024. 9. 27.) 이전의 부정청구등 사실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2024. 9. 27.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부칙 제4조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발생한 부정이익등이라고 할지라도 법 개정일 이후에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Q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같은 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때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를 적용하여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제재부가금 제도의 경우 부과·징수, 감면, 적용 배제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추가 환수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면서 제재부가금 감면과 관련하여서만 공공재정환수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해당 입법권자가 법 집행 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규정한 추가 환수금이라는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추가 환수금의 부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사유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13

부정수익자가 행정청이 환수처분 사전 통지를 하기 전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자가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의심자'에 해당하더라도 반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나요?

A 자진신고 및 반환의 주체는 '부정수익자'이므로,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의심자'라고 하더라도 그자가 '부정수익자'라고 판단되면 반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14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 기준 제4호가목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부정수익자(또는 의심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에서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주체는 '행정청'이지 '수사기관'이 아닌 점, 행정청은 부정청구등 여부 판단 및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주체이고 수사기관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는 주체로서(제8조제4항)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른 점으로 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를 행정청의 조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재부가금 감면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는 '행정청'이 실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행정청의 조사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수사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15 행정청에서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만 하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부가금을 면제하여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은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정수익자가 사전통지 전 1) 자진하여 신고할 것 2)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했을 것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미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Q 16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후 부정수익자가 환수액을 전액 납부했을 때,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은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이후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통지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은 이상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Q 17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에서 자진신고 및 반환의 시간적 기준이 되는 '사전 통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상 사전 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을 따르고 있고,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환수처분의 사전통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될 때 사전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18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및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A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적용 배제 시에도 그 법률의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공공재정환수법상 감면 또는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 1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 환수분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초과 환수분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제재부가금과 같은 성격의 금전적 제재처분인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액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환수는 부정청구등으로 인해 교부한 보조금의 취소 결정에 따라 행정청이 제공한 보조금을 반환받는 처분행위이므로 제재부가금이나 과징금 같은 금전적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의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환수한 경우, 초과 환수분을 부정수익자에게 반환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 환수분만큼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06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제11조)

06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제11조)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Q 01 부정이익의 누적 총합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제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하는 제10조의 규정과는 구분되며,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면제를 검토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1조 각 호는 반드시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제1호·제2호·제3호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과거 3년간의 부정이익의 누적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02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7조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기간이 환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사전 통지 이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환수 처분 후라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도 포함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7조제3호의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의 표현을 사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납부기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서 말하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은 '납부기한'과는 다른 의미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의견제출기한을 포함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에 따른 환수 처분을 예견하고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의 금액을 인지한 이후로 환수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기까지는 통상 40일 이상의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서 말하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은 '납부기한'과는 다른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03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를 적용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르면,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르면, 과거 3년간의 누적 부정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정청구등의 종류, 행위 양태, 반복성,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및 성격, 부정수익자의 과거 전력, 동일·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07

가산금 및 체납처분(제12조)

07 가산금 및 체납처분(제12조)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Q 01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a) 납부 지연 기간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체납액에 시행령 제8조의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부과하나요, 아니면

(b) 체납액에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되, 납부 지연 기간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은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즉 납부 지연 기간을 산정한 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예시) 환수금액 10,000,000원, 납부기한 2023. 2. 28., 완납 2024. 10. 1.
→ 납부 지연 기간: 580일(2023. 3. 1.부터 2024. 9. 30.까지)
→ 적용이자: 5%(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
→ 가산금: 793,495원
(10,000,000원 × 5% × 306/365 + 10,000,000원 × 5% × 274/366)

Q 02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등 납부기한 다음날에 부정이익등을 완납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A 체납기간은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므로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등 납부기한 다음날에 부정이익등을 완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03 환수처분에 대한 체납만으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가산금 산정을 위한 이자율은 연 이자율인가요?

A 제재부가금 부과 없이 환수처분만 받았더라도,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 이자율입니다.

Q 04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매월 가산금이 누적되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의 가산금은 부정이익등 반환 기한 또는 제재부가금 완납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한 번에 부과하는 것으로, 누적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08

조사의 실시 등

(제13조)

08 조사의 실시 등(제13조)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 01

행정청에서 부정이익등의 환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정수익 의심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다시 말해, 부정수익 의심자 등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할 때,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에 따른 행정행위(절차)임을 밝혀야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제1항은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절차 준수 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의 준수 여부가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5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09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17조~제24조)

09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제17조~제24조)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 · 감사 · 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 · 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 · 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 ·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 · 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 · 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 · 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③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⑤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조회, 구조금의 지급 범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Q 01 ○○부에 신고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면 신고자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2항은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의 신고가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10

부 칙

10 부칙

Q 01

공공재정환수법 부칙〈제16323호, 2019. 4. 16.〉 제1조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제2조는 “이 법 중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청구등 행위가 2020. 1. 1. 전후로 걸쳐 있는 경우,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적용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부정청구등 행위가 2020. 1. 1. 전후로 걸쳐 있는 경우, 청구 건별로 분리하여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매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고 있는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 행위가 2020. 3월에 적발된 경우 2019. 12. 31.까지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2020. 1. 1.부터 지급된 금액이 부정이익에 해당합니다.